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 : (인)

본점소재지 : (주소)
(전화)

작성책임자 : (직책) (성명)
(전화)

실무담당자 : (직책) (성명)
(전화)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가 없고, 제출한 증빙은 진실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당사는 회계·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또한, 감사인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 요건을 계속 유지하며, 동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동 사실을 보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감사인 지정 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

(서명)

1. 회사 개황

구 분	기재 방식			
1-1 회사명				
1-1-1 회사명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1-1-2 변경 전 회사명 (1-1-1에서 “예”인 경우)				
1-2 회사 고유번호				
1-3 법인등록번호				
1-4 사업자등록번호(본점)				
1-5 법인 구분	▼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1-6 당기 사업연도	제○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OO개월
1-6-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	▼ 예 / 아니오			
1-6-2 결산기 변경 내용 (1-6-1에서 “예”인 경우)	MM월에서 MM월로 변경			
1-7 금융회사 여부	▼ 예 / 아니오			
1-8 지주회사 여부	▼ 예 / 아니오			
1-9 전기말 자산총액(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원
1-10 대표자명				
1-11 본점 주소지	우편번호			
1-12 담당자명				
1-13 담당자 연락처				
1-14 담당자 이메일주소				

기재상의 주의

1-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1-5 평가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6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

1-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9 전기 별도 또는 개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2. 신청자격

구 분	기재 방식		
2-1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			
2-1-1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2-2 감사인 지정 이력 및 지정 사유 (2018.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연도부터 대상)	사업연도		지정사유
	제O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제O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제O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제O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제O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제O기	YYYY년 MM월부터	YYYY년 MM월까지

기재상의 주의

2-1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1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1 등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2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받아 동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내역을 기재한다. 최근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 사유를 작성한다.

■ 첨부서류

1. 공증받은 정관
2.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규정

3. 결격사유 자체점검

가. 회계신뢰성 결여 여부

구 분	해당여부		
	전기	2기 전	3기 전
1-1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작성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1-1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여부 (1-1에서 “예”인 경우)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1-2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여부 (1-1에서 “예”인 경우)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구 분	해당여부		
	전기	2기 전	3기 전
1-1-3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여부 (1-1에서 “아니오”인 경우)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2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2-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적정 여부 (1-2에서 “예”인 경우)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수정 여부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3-1 재무제표 수정 사유 (1-3에서 “예”인 경우)			
1-3-2 수정내역 (1-3에서 “예”인 경우)			
1-3-3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 여부 (1-3에서 “예”인 경우)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1-3-4 (수정전) 자산총액 (1-3에서 “예”인 경우)	원	원	원
1-3-5 (수정후) 자산총액 (1-3에서 “예”인 경우)	원	원	원
1-3-6 (수정전) 부채총계 (1-3에서 “예”인 경우)	원	원	원
1-3-7 (수정후) 부채총계 (1-3에서 “예”인 경우)	원	원	원
1-4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선물 위원회의 감리가 진행 중인지 여부	▼예/아니오		

기재상의 주의

- 1-3 평가를 받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를 수정(재작성)했는지 기재한다. 회계오류에 대한 재작성과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수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 1-4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호·제3호에 따른 감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주석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련 주석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

나. 법령 위반 여부

(1) 횡령·배임 여부

구 분	해당여부
2-1 직전 3년 이내에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실 발생 여부	▼ 예 / 아니오

* 횡령·배임 사실 발생 내역 (2-1에서 “예”인 경우 아래의 표를 작성)

2-1-1 공시대상 여부	2-1-2 공시일 (확인일)	2-1-3 발생일	2-1-4 임직원 구분	횡령·배임 금액			정정공시	
				2-1-5 사실확인 금액(A)	2-1-6 자기 자본(B)	2-1-7 비율 (A/B)	2-1-8 정정 공시일	2-1-9 정정공시내용
▼ 예 / 아니오			▼ 임원 / 직원/ 임원 및 직원	원	원	%		

기재상의 주의

2-1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소속 임직원(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중 위반사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 포함)의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한 경우이다.

2-1-1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공시규정에 따라 회사 소속 임직원(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중 위반사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 포함)의 횡령·배임 사실이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이다.

2-1-2 횡령·배임 사실이 공시된 거래소 공시의 공시일을 기재한다. 거래소에 공시되지 않은 횡령·배임 사실 건은 회사가 사실을 확인한 날을 YYYY년 MM월 DD일 형식으로 기재한다.

2-1-4 횡령·배임 행위자(혐의자를 포함한다)가 임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는 직원인지 기재한다.

2-1-6 자기자본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10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조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공시사유 발생일(공시대상이 아닌 경우 공시여부 확인일)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기자본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공시사유 발생일(공시대상이 아닌 경우 공시여부 확인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 첨부서류

1.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소 공시대상인 경우 거래소의 횡령·배임사실확인 공시 및 (기재정정이 있는 경우) 기재정정 공시 사본 등)
2.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무혐의 통지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2) 외부감사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및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위반에 한정

구 분	해당여부
2-2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외부감사법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예 / 아니오

2-3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제146조제2항·제151조제2항·제158조제2항·제164조제2항·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 예 / 아니오
--	-----------

*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역 (2-2에서 “예”인 경우)

2-2-1 제재일자	2-2-2 위반법령	2-2-3 위반내용	2-2-4 제재유형	2-2-5 제재내용
YYYY-MM-DD			▼ 조치, 벌칙, 과징금, 과태료	

**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역 (2-3에서 “예”인 경우)

2-3-1 제재일자	2-3-2 위반법령	2-3-3 위반내용	2-3-4 제재유형	2-3-5 제재내용
YYYY-MM-DD			▼ 조치, 벌칙, 과징금, 과태료	

기재상의 주의

2-2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6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이다.

2-3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32조·제146조제2항·제151조제2항·제158조제2항·제164조제2항·제165조의18 또는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29조·제429조의2·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같은 법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8조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이다.

2-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위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예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등).

2-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제재의 내용(예: 조치의 경우 조치유형(경고, 주의 등))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조치 시행문 사본, 과징금 고지서 사본, 과태료 고지서 사본 등)

4.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충족여부	비고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20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5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5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나. 감사기구의 전문성	4)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5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5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10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다.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7)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50점		
	8) 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40점		
	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4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6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11)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6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라. 감사인 선임 절차 투명성	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10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점	▼ 감점/미감점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50점	▼ 감점/미감점	
마.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15)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10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바. 추가 가점·감점 사항	16)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또는 표창	50점	▼ 충족/미충족 /부분충족	
	17) 회계투명성 또는 지배구조 관련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50점	▼ 감점/미감점	

기재상의 주의

1. 평가항목 : 세부내용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다.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비고' 란에 확약서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3. 충족여부 :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확약서를 제출하는 항목의 경우 확약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7)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8) 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이므로 평가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첨부서류

1. 확약서
2. 확약사항이 반영된 회사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

5. 평가항목별 세부 내역

가. 감사기능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최근선임일	임기종료일	분리선출 여부	사외이사 여부
1	위원장	OOO	YYYY-MM-DD	YYYY-MM-DD	▼예/아니오	▼예/아니오
2	위원	OOO				
3						

...						
계	-		-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회계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증빙 목록
▼예/아니오	▼예/아니오			
		-	-	-

기재상의 주의

1. 평가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의 현황을 작성한다.
2. 분리선출 여부: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한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기재한다.
3.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 가. 해당 여부: 해당하는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기재한다.
 - 나. 전문가 유형: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각호에 따른 유형으로 아래 사항 중 택일하여 기재한다.

유형	전문가 요건	증빙
1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공인회계사 등록증 2.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2호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1. 학위증명서 2. 학위논문(세부전공이 회계 또는 재무로 미표시되는 경우) 3.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3호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재직부서 또는 담당 업무 내용 포함)

다. 관련 경력: 전문가 유형별로 근무기간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회사명, 기관명, 관련 부서명 또는 구체적 업무 기재)

■ 첨부서류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감사위원 선임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등)

(평가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최대 200점)

구 분	기재 방식
1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1-1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 2명 이상 / 1명 / 0명
1-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 종료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약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1-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분리선출하여야 할 감사위원의 수 (1-2에서 “예”인 경우)	▼ 2명 / 1명
1-2-2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예정 시기 (1-2에서 “예”인 경우)	YYYY년 MM월

(평가1)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기재상의 주의

1-1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른 방식으로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를 기재한다.

(평가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2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사외이사 여부	
2-1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규모	▼ 전원 / 3분의2 초과 / 3분의2 이하
2-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 종료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을 확약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2-2-1 선임을 확약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규모 (2-2에서 “예”인 경우)	▼ 전원 / 3분의2 초과
2-2-2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선임하여야 할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수 (2-2에서 “예”인 경우)	0명
2-2-3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예정 시기 (2-2에서 “예”인 경우)	YYYY년 MM월

(평가2)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평가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	-------

3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3-1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 예 / 아니오
3-2 (확약서제출) 감사인 자유선임시기 도래시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1에서 “아니오”인 경우)	▼ 예 / 아니오
3-2-1 당기 감사인	OO회계법인
3-2-2 당기 감사인 선임 방법	▼ 자유선임/지정
3-2-3 당기 감사인 감사계약 체결일	YYYY년 MM월 DD일
3-2-4 당기 감사인 감사계약 종료일	YYYY년 MM월 DD일
3-2-5 계약기간	Y년
3-2-6 잔여 계약기간	Y년
3-2-7 이후 감사인 선임 예정시기 (3-2에서 “예”인 경우)	YYYY년 MM월 DD일

(평가3)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기재상의 주의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로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이다.

■ 첨부서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감사인 선임보고서, 감사계약서 사본 등)

나. 감사기구의 전문성

(평가4)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4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규모	
4-1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	▼ 예 / 아니오
4-1-1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수	○명
4-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4-1에서 “아니오”인 경우)	▼ 예 / 아니오
4-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선임하여야 할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수 (4-2에서 “예”인 경우)	○명
4-2-2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선임 예정 시기 (4-2에서 “예”인 경우)	YYYY년 MM월

(평가4)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기재상의 주의

4-1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 이상이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경우이다.

(평가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5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여부	
5-1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 예 / 아니오
5-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를 회계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5-1에서 “아니오”인 경우)	▼ 예 / 아니오
5-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계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선임 예정 시기 (5-2에서 “예”인 경우)	YYYY년 MM월

(평가5)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평가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최대 50점)

구분	기재 방식
6 회계전문성을 가진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여부	
6-1 감사위원회위원장이 회계전문가인 경우	▼ 예 / 아니오
6-2 (확약서제출) 감사위원회위원장의 임기가 종료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장을 회계전문가로 선임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6-1에서 "아니오"인 경우)	▼ 예 / 아니오
6-2-1 확약을 이행하기 위한 회계전문가인 감사위원장의 선임 예정 시기 (6-2에서 "예"인 경우)	YYYY년 MM월

(평가6)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다. 회계·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1) 회계·감사지원조직 현황

연번	구분	부서명	성명	직책	임원 여부	입사일	담당업무
1					▼예/아니오	YYYY-MM-DD	
2							
...							

회사내 근무기간(개월)			타회사 회계·감사 업무 경력(개월)	회계전문가 관련			
전체	회계·감사 업무	그 외 업무		해당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증빙 목록
				▼예/아니오			

*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부서명	총원(C)	내부감사 업무 담당 인원수(A)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 담당 인원수(B)	비율 $[(A+B)/C] \times 100$	독립성 확보 여부
	명	명	명	%	
	명	명	명	%	

기재상의 주의

- 평가기준일 현재 회계·감사지원조직의 현황을 작성한다. (부서장 및 구성원을 모두 포함한다)
- 회계·감사지원조직은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및 내부감사 부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하되, 평가위원회가 회사의 특성이나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부서로 한정한다.

■ 첨부서류

1. 평가기준일 현재 회계·감사지원조직 관련 내부규정
2. 평가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적절성(부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직제규정, 조직도, 감사위원회 보고안건 등)
3.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소속부서, 근무연수 및 전문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예: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 내부기록(인사발령 기록 등), 경력증명(재직증명서 등) 등)

(평가7)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7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규모	
7-1 회계·감사지원조직 임직원의 수	○명
7-1-1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현원	○명
7-1-2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현원	○명
7-2 전체 임직원 수	○명
7-3 전기말 자산총액(별도 또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 2조원 이상/5천억~2조원 미만 /1천억~5천억원 미만/1천억원 미만

■ 첨부서류

전체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평가8) 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최대 40점)

구 분	기재 방식
8 회계·감사지원조직 부서장 및 구성원의 근무연수	○개월

(평가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최대 40점)

구 분	기재 방식
9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회계전문가 근무 여부	
9-1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내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9-1-1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명
9-1-2 회계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자	○명
9-1-3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9-1-1부터 9-1-2까지에 준하는 회계전문성을 보유한 자	○명

(평가9)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평가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최대 60점)

구 분	기재 방식
10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부서장의 직급	

10-1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회사의 등기임원인 경우	▼ 예 / 아니오
10-2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회사의 비등기임원인 경우	▼ 예 / 아니오

(평가10)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첨부서류

1. 임직원 직급(직위)에 관한 내부규정
2.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이 비등기임원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비등기 임원 증빙

(평가11)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최대 60점)

구 분	기재 방식
11 감사위원회의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임면 동의(협의)권 보유 여부 및 불이익조치 방지 여부	
11-1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에 대한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11-2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평가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11-3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부서장에 대한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11-4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11-5 (감점)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에 대한 평가/인사상 불이익 조치 사실 확인	▼ 예 / 아니오

(평가11)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첨부서류

감사위원회가 전담지원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동의(협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전담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평가 및 임면동의(협의)권을 행사한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감사위원회 회의록 및 안건 등)

라.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평가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최대 100점)

구 분	기재 방식
12 감사인 선임 및 공모(公募)절차의 투명성	
12-1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12-1-1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예 / 아니오
12-1-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감사보수 및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예 / 아니오
12-2 (확약서 제출)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12-1-1과 12-1-2가 "아니오"인 경우)	
12-2-1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예 / 아니오
12-2-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감사보수 및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단,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예 / 아니오

(평가12)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기재상의 주의

12-1-1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정한 적정 감사시간 및 적정 감사보수를 포함하여 2주 이상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공모글을 게시한 경우이다. 단, 기재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문서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1-2 회사가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계약 시 정한 감사시간·감사보수 및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감사보수와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 정보를 포함하여 2주 이상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 공모글을 게시한 경우이다. 단, 기재된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문서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첨부서류

- 회사가 2주 이상 기간 동안 평가기준에서 정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모를 통해 감사인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회사 홈페이지 게시글 등)
-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안건

(평가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13 감사인 선임·공모시 평가지표의 적정성	
13-1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13-1-1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중 (13-1이 "예"인 경우)	초과비중 기재 (%를 제외한 숫자만 기재)
13-2 (확약서 제출) 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위해 산정하는 가격 평가 배점

(평가13) 충족여부	근거
▼ 감점 / 미감점	

기재상의 주의

13-1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외부 감사인 선임규정 표준예시」상의 가격지표 비중인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중(%를 제외한 숫자, 예: 20%인 경우 20으로 기재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외부감사인 선임평가 시 평가기준상 가격지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내부규정, 외부감사인 선임 제안요청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결과 등)

(평가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14 감사보수 체결과정 등의 적정성·객관성	
14-1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할 경우	▼ 예 / 아니오
14-1-1 세부 내역 (14-1에서 "예"인 경우)	
14-2 (확약서 제출)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 예 / 아니오

(평가14) 충족여부	근거
▼ 감점 / 미감점	

기재상의 주의

14-1-1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할 경우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첨부서류

회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이 제안한 감사시간이나 감사보수를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의사록 및 안건, 외부감사인 입찰 제안서, 감사계약서 및 계약 관련 공문 등)

마.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15) 회사특성별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최대 100점)

구 분	기재 방식
15 회사의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한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	
15-1 회사가 법령상의 의무를 넘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또는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 투자를 통한 다음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15-1-1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및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1명을 선임한 경우	▼ 예 / 아니오
15-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예 / 아니오
15-1-3 대통령령 제340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영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예 / 아니오
15-1-4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5-1-1부터 15-1-3까지에 준하는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평가15)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기재상의 주의

- 15-1-1 「상법」 제542조의10제1항 및 제542조의11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12제2항 단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1명을 선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 15-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15-1-3 대통령령 제3401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대통령령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임에도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영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15-1-4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5-1-1부터 15-1-3까지에 준하는 회사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 **첨부서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바. 추가 가점·감점 사항

(평가16) (가점)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또는 표창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16 (가점) 회계투명성·지배구조 관련 외부포상 또는 표창	
16-1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하여 다음의 외부포상이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16-1-1 최근 3년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로부터 벨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16-1-1-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 예 / 아니오
16-1-1-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 예 / 아니오
16-1-2 최근 3년내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이에스지기준원이 평가한 기업지배구조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16-1-2-① 최근 3년간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S등급을 1회 이상 획득한 경우	▼ 예 / 아니오
16-1-2-② 최근 3년간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면서 A+등급을 1회 이상 획득한 경우	▼ 예 / 아니오
16-1-3 최근 3년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한국코스닥협회에서 개최하는 코스닥대상 시상식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16-1-3-①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	▼ 예 / 아니오
16-1-3-② 그 밖에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표창	▼ 예 / 아니오
16-1-4 최근 3년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 행사에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표창을 수여받은 경우	▼ 예 / 아니오
16-1-5 그 밖에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6-1-1부터 16-1-4까지에 준하는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 예 / 아니오
16-2 세부 내역 (16-1-1-①, 16-1-1-②, 16-1-2-①, 16-1-2-②, 16-1-3-①, 16-1-3-②, 16-1-4, 16-1-5에서 “예”인 경우)	

(평가16) 충족여부	근거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기재상의 주의

16-1-1 최근 3년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를 의미한다. 이하 (평가16)의 각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6-1-5 그 밖에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16-1-1부터 16-1-4까지에 준하는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이다.

16-2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이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 관련하여 (평가16) 각 항목의 외부 포상이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포상 또는 표창의 대상자·날짜·종류·증빙 등을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표창장 사본 등 외부포상 또는 표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지배구조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가17) (감점)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최대 △50점)

구 분	기재 방식
17 (감점) 회계투명성 또는 지배구조 관련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17-1 회사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평가17) 충족여부	근거
▼ 감점 / 미감점	

기재상의 주의

17-1 회사가 회계투명성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위반 내용·동기·결과를 포함한 관련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확약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20

이 확약서는 회계·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유예를 위하여 OO회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됩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이행 완료할 때까지 이행여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이행 완료 시 지체없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세부추진계획 상의 이행 확약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이며, 이 경우 감사인 지정 유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다 음 -

※ 평가 기준별 확약 사항을 기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첨부

위 평가 기준별 확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회사명 :

대 표 이 사 : (서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 날인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명해야 함

[붙임]

이행계획서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20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호 등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겠습니다.

1. 평가기준 미충족 사항
2. 미충족 사유
3. 향후 이행계획
4. 이행 예정시기

회사명 :

대 표 이 사 : (서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 날인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명해야 함

기재상의 주의

1. 요약서에 기재한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미충족 사항 및 사유, 향후 이행계획, 이행 예정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항목이 많은 경우 별첨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위의 각 란에는 “(별첨)에 기재”로 작성한다.

(별첨) 이행계획 총괄표

(별첨)

이행계획 총괄표

평가기준	미충족사항*1	이행방법*2	이행 예정일*3	보고 예정일*3

기재상의 주의

1. 협약서의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미충족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 당사는 2인의 사외이사 및 1인의 사내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1인만을 분리선임하였습니다. 각 이사의 임기는 ○○년 ○월 ○일까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내역

성 명	사내·사외이사 구분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임기
○○○	사내이사	회계전문가	○○년 ○월 ○일 ~○○년 ○월 ○일
△△△	사외이사	재무전문가	○○년 ○월 ○일 ~○○년 ○월 ○일
□□□	사외이사	-	○○년 ○월 ○일 ~○○년 ○월 ○일

2. 협약서의 평가항목별 미충족 사항의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 당사는 ○○년 ○월 ○일 임기가 만료되는 □□□ 이사 등을 ○○년 ○월 ○일(개최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일 또는 예상일)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의 방법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3. 이행예정일은 이행가능한 가장 빠른 날로 기재하고, 보고예정일은 이행한 날로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로 기재한다.